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07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 강준현 · 김상희 · 김윤덕

홍성국 • 임종성 • 남인순

김수흥 · 김병기 · 김경협

송재호·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 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 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이행에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성과를 조기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 변경절차 면제(안 제

3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있음에도 지자체가 활성화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시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행정력 낭비 및 사업 지연이우려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의무 및 그 절차를생략하도록 함.

나.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별도 규정(안 제56조)

국가시범지구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변경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남. 이를 개선하고자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변경근거를 별도로마련함.

다.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변경 지자체 권한 확대(안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활성화계획 변경 시에는 제20조에 따른 시·도지사 등이 확정 또는 승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함.

라.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등 절차 생략(안 제15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설정 (안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청취 기한을 규정함.

- 바. 도시재생사업 특례 등 적용대상에 인정사업을 포함(안 제26조의2) 도시재생사업 중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해 서도 타 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함.
- 사. 아울러, 입법에 미비가 있었던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34조).

법률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 중 "구청장등은"을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위임을 받아"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고시된"을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지정·고시된"으로, "고시는"을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으로 한다.

제2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0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제26조의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전략계획수립권자는"을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56조제3항 후단 중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를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 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 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 립) ① (생략) 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등은 전략계획수립권 ② 구청장등은 도시재생활성화 자의 위임을 받아 -지역에 대하여 근린재생형 활성 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 정 및 승인) ① · ② (생 략) 정 및 승인)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 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 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 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④ ~ ⑨ (생 략)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 저 력)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결정·고 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 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른다.

3
<u>하며, 지방의회는 전</u>
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
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
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 ⑨ (현행과 같음)
11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
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결정·지정·고시된
고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

⑤·⑥ (생 략)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 ⑧ (생 략)

<신 설>

획의 결정.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

⑤·⑥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 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처분 등) ① ~ ⑧ (현행과 같 음)

⑨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 장등은 도시재생사업(제26조의 2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있어 서의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 서의 특별조치) ① 전략계획수 립권자는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 립권자 및 구청장등은 -----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하여 도 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도시 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방자 치단체의 경우에는 도시재생전 략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선도지 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 다.

③ • ④ (생 략)

<신 설>

⑤ • ⑥ (생 략)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
<u> </u>

- ③·④ (현행과 같음)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전략계획수립권자 및 구청장 등은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 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국가 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승인 하여 국가시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지구계 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33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국가시범지구계획"으로 보고,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④·⑤ (생 략) <신 설>

③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라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가시범지구계
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장과
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및 특
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